

부속서 I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주해

1. 제 7.4조(내국민 대우), 제 7.5조(최혜국 대우), 제 7.8조(이행요건) 및 제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의 분야에만 적용된다.

가. 제조업

나. 농업

다. 어업

라. 임업

마. 광업 및 채석업

2. 이 부속서는 제7.10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제1항에 열거된 분야의 인도네시아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 7.4조(내국민 대우)

나. 제7.5조(최혜국 대우)

다. 제 7.8조(이행요건), 또는

라. 제 7.9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분야 : 모든 분야
- 하위 분야 : 토지의 취득 임대
- 산업 분류 :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역
-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 조치내용 : 토지 소유권 (hak milik)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제한된다.

주: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고 주소를 둔 외국 국민 및 외국기업은 다음의 권리에 근거하여 토지 및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 a. 임차권 (hak guna milik)은 외국기업에 최대 35(삼십오)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5(이십오)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 b. 건축권 (hak guna bangunan)은 외국기업에 최대 30(삼십)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이십)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 c. 사용권 (hak pakai)은 (1) 외국 국민에 최대 30(삼십)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이십)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고, (2) 외국기업에 최대 25(이십오)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이십)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 d. 임대권(hak sewa)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 국민 및 외국기업에 대하여 부여된다.

그러한 토지 및 재산의 취득은 관련 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조치근거 : 인도네시아공화국 1945년 헌법 제33조

농민 원칙의 기본 규정에 관한 1960년 법률 제5호

토지경작권, 구조물이용권 및 토지이용권에 관한 1996년 정부령 제40호,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위한 거주 또는 주거 소유에 관한 2015년 정부령 제103호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외국인 투자 설립의 등록 요건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정 분야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¹는 투자금액이 1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초과(토지 및 건물은 제외한다)이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

산업 업종 분류를 위한 근로자수 및 투자가치에 관한 산업부장관령 제64/M-IND/PER/7/2016호, 그리고

투자 면허 및 설비를 위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2018년 투자조정위원회 의장령 제6호

¹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 따라 확립된다.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²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에 근거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이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직접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³는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제25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해야 한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²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 따라 확립된다.

³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내 최종이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지 유통 대리인을 임명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관 유보항목 3번에 따라 열거된 조치근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근거 :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

상품 유통의 일반 규정에 관한 2016년 통상부령 제22호

상품 및/또는 서비스 대리인 또는 유통업자 등록 발행 규정 및 절차에 관한 2006년 통상부령 제11호, 그리고

투자 면허 및 설비를 위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2018년 투자조정위원회 의장령 제6호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의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사 관련 직책을 맡도록 요구된다.

조치근거 : 인력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

외국인 고용 및 근로 동반자 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2014년 대통령령 제74호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한된 특정 직책에 관한 2012년 인력 및 이주부 장관령 제40호, 그리고

외국인 고용에 관한 2018년 대통령령 제20호

6. 분야 : 어업

하위 분야 : 포획어업

산업 분류 : ISIC 050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포획어업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어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5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4년
법률 제31호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1983년 법률 제5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포획어업사업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12/MEN/2009호에 의하여 개정된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8호, 그리고

정부 정책

7.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바다 모래 채취(ISIC 1429)에서의 외국인 투자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 그리고

투자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8.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공기업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지정기업 ⁴ 으로 제한된 활동이 지정기관 외의 활동으로 자유화되거나 그러한 지정기업이 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내국민 대우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적용될 수 없다.
조치근거	: 공기업에 관한 1998년 정부령 제13호

⁴ 설명의 목적상, 이는 Perum PERHUTANI 로 표시되는 국영영림공사와 Perum PERURI로 표시되는 인도네시아 조폐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9.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조치내용 : 이 협정의 발효 전 존재하는 기업/프로젝트의 경우, 면허/허가를 위한 승인에 부과된 조건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근거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10.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 분야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a.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보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및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생산 능력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가진 다음 농산물의 제조업자

- 건조 정향꽃, 동식물 원유, 코프라, 섬유, 코코넛 껍질 숯, 가루, 나타데코코, 코코넛 오일, 야자유, 면 섬유, 목화 종자, 농장 생산물(코코아콩 및 커피콩)의 탈피·세정·건조 및 선별, 건조 캐슈넛 및 캐슈넛 쉼 액용 캐슈넛, 건조 백후추 및

건조 흑후추용 후추, 사탕수수·사탕수수
상단 및 사탕수수 찌꺼기, 홍차/녹차,
건조 담뱃잎, 시트용 고무·농축 라텍스,
자트로파 원유(ISIC 0111, 0140,
1513, 1514, 1531, 1542, 1549,
1600, 2429, 2519)

- 어류 가공: 어류 삶기(ISIC 1512)
- 떡볶이 및 두부 형태의 대두 가공식품의 제조(ISIC 1513, 1514, 1549)
- 간장, 떡볶이 및 두부 외 대두 및 콩 식품의 제조(ISIC 1513, 1549)
- 부패성 조제케이크 제조(ISIC 1513, 1514, 1549)
- 크래커(krupuk), 플레이크(keripik), 튀기고 조미된 비스킷(peyek) 및 동종식품의 제조(ISIC 1513, 1514, 1549)
- 팜 슈가/자바설탕/적설탕의 제조(ISIC 1542)
- 뿌리 및 괴경 마일링(탈피 및 세정)(ISIC 0140, 1531)
- 패턴이 있는/담근/묶인 원사용 천연 및 인공 섬유 수공구 원사 염색(ISIC 1711)
- 직물 인쇄 산업(ISIC 1712, 1729)
- 수공 바틱 산업(ISIC 1712, 1729)
- 니트직물, 특히 레이스 산업(ISIC 1730)
- 무슬림 여성의 기도복, 스카프, 머리 스카프 및 그 밖의 전통 산업(ISIC 1810)
- 자수 산업(ISIC 1729)
- 수공업: 등나무 및 대나무 조물 산업, 등나무 및 대나무 외 식물 조물 산업, 가구 산업 외 나무

수공업 조각산업, 나무·등나무 및 대나무
가정용 주방 산업, 따로 분류되지 않은
나무·등나무·코르크 제품 산업 (ISIC 2029,
3699)

- 전통 악기 (ISIC 3692)
- 고무 경화 산업 (ISIC 2519)
- 점토 가정용품, 특히 도자기 산업 (ISIC 2691)
- 팽이와 삽 외 토지 준비, 생산 가공, 수확 후
가공용 농작 수공구 산업 (ISIC 2893)
- 수공 및 절단용 수동 또는 반자동 수공구
산업 (ISIC 2893)
- 모터사이클 정비 및 수리, 다만 모터사이클
판매와 통합된 경우는
제외 (대리인/유통업자) (ISIC 5040)
- 개인 및 가정 물품 수리 (ISIC 3610, 5260)
- 임산물 가공 1차 산업: 소나무 수액(올레오
송진) 및 대나무 (ISIC 0200)
- 생산능력 연간 2,000m³ 이하 제재소 또는
제재업
- 등나무 가공 1차 산업 (ISIC 2010)

b. 100퍼센트 국내지분 참여

-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주요 장비 산업 (ISIC
2520, 2893, 2927, 2929, 3530, 3610)
- 전통 의약품 및 천연 추출물 가공 산업 (ISIC
2423)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유탄유 공급 및 서비스에 관한 2001년 대통령령 제21호

농장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개정에 관한 2016년 농업부
장관령 제29호, 그리고

정부 정책

11. 분야 : 농업
- 하위 분야 :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 정부 수준 : 중앙
-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 분야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 a.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보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작물 재배에 대하여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강낭콩, 카사바 및 고구마) 그리고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식량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농장종묘사업에 대하여
 - 자트로파 작물,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원료 및 면화,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작물,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원예 외의 것), 그 밖의 향신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ISIC 0111, 0112, 0113, 0200)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농장사업에 대하여
 -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원예 외의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 그 밖의 농장(ISIC 0111, 0112, 0113, 0200)
- 125마리 이하의 수의 돼지 사육 및 농장(ISIC 0122)
- “토종닭(ayam buras)” 사육 및 농장과 그 이종교배 및 농장(ISIC 0122)

조치근거 : 농장에 관한 2014년 법률 제39호

2014년 법률 제41호에 의하여 개정된 가축 및 동물 건강에 관한 2009년 법률 제18호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이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식물 및 야생동물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식물 재배사업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18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농장종묘에 관한 1995년 정부령 제44호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의 제2차 개정에 관한
2017년 농업부 장관령 제21호

축산 분야 면허 및 등록 지침에 관한 2002년 농업부 장관령
제404/Kpts/OT.210/6/2002호

원예작물 재배 면허 지침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 제
70/Permentan/PD.200/6/2014호

수의 서비스 지침에 관한 2009년 농업부 장관령 제2호

주요 작물 재배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농업부 장관령 제
39/Permentan/OT.140/6/2010호, 그리고

정부 정책

12. 분야 : 임업
- 하위 분야 : -
- 산업 분류 : ISIC(하기 참조)
- 정부 수준 : 중앙
-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 분야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 a.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유보
 - 그 밖의 산림 식물(종려당, 캔들넛, 타마린드 종자, 숯 원료, 계피) 개발(ISIC 0200)
 - 천연 제비등지 개발(ISIC 0122)
 - b. 100퍼센트 국내 지분 참여
 - 천연림에서의 산림목재 제품 개발(ISIC 0200)
 - 산림수/식물의 품종 및 종자 재배 및 거래(산림수/식물의 품종 및 종자의 수출입)(ISIC 5121)
 - 산림지역 수자원 개발(ISIC 0200)
 - 천연 야생동식물 서식지에서의 야생동식물 포획 및 거래(ISIC 0150)

조치근거 : 임업에 관한 1999년 법률 제41호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년 법률 제5호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년 정부령 제3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년 정부령 제6호

국립공원 활용지역, 산림대공원, 자연관광공원 내 자연관광
허가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36호

식물 및 야생동물종의 이용에 관한 1999년 정부령 제8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 그리고

정부 정책

1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1. 관련 규제당국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⁵가 100퍼센트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은, 먼저 부여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상업 생산을 개시한지 일정 기간 후,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⁶에게 기업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이다.

2. 광물 및 석탄 하위분야⁷의 경우, 외국인 투자⁸를 위한 광업사업면허(Izin Usaha Pertambangan)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부여된다. 생산 개시 5(오)년 후, 광업사업면허(Izin Usaha Pertambangan) 부여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의 외국인 주주⁹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⁵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⁶ 이 유보의 목적상, “국내 투자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의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은 외국인 자본 투자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지분 소유에 관한 1994년 정부령 제20호에 근거하고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의 명문화 후 이루어진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⁷ 이 유보의 목적상, 광물 및 석탄 광업 하위 분야의 범위는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와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제4차 개정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1호에 정의된다.

⁸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 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서 찾을 수 있다.

⁹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주주” 라는 용어는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개정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인 주주¹⁰에게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다.

- 1) 중앙정부
- 2) 지방정부
- 3) 구/지방자치당국
- 4) 국영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 및 Badan Usaha Milik Daerah)
- 5) 국가민간사업체¹¹

해당 인도네시아인 주주의 지분은 생산 개시 후 10(십)년 후에 과반수에 도달한다.

에 관한 2012년 정부령 제24호에서 찾을 수 있다.

¹⁰ 이 유보의 목적상, “인도네시아인 주주” 라는 용어는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의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개정에 관한 2012년 정부령 제24호에서 찾을 수 있다.

¹¹ 이 유보의 목적상, “국가민간사업체” 라는 용어는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에서 찾을 수 있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

해안지역과 작은 섬 관리에 관한 2014년 법률 제1호

외국자본투자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서의 지분 소유에 관한 1994년
정부령 제20호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제3차 개정에 관한 2014년 정부령 제77호 j.o. 제4차 개정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1호

지분매각 절차 및 주식매각 가격책정 메커니즘에 관한 2017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9호, 그리고

광물 및 석탄 광업 사업에 관한 201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25호

14.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1010, 1020, 1030, 1310, 132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광업사업면허지역(이하 “WIUP”라 한다)는 광업사업면허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을 지칭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법적 실체는 500헥타르 미만 면적의 금속광물 및 석탄 WIUP의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호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 제23호 j.o. 2010년 정부령 제23호의 제4차 개정에 관한 2017년 정부령 제1호, 그리고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보고와 지역 면허 부여 절차에 관한 201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1호

1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조치내용 : 비거주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원천에서 다음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퍼센트가 될 것이다.

a. 이자

b. 로열티

c. 배당금

d. 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진 서비스 수수료

조치근거 : 소득세에 관한 1983년 법률 제7호의 제4차 개정과 관한 2008년 법률 제36호

1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제7.8조)

조치내용 : 제7.8조(이행요건)에 따른 의무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 a. 현지 콘텐츠
- b. 무역균형
- c. 기업으로 인한 외환 유입과 관련된 외환 제한
- d. 수출 통제, 그리고
- e. 기술의 이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에 따라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되고,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법적 실체는 법규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근로자에게 훈련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조치근거 :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그리고

정부 정책

17. 분야 : 농업, 제조업
- 하위 분야 : 원예
- 산업 분류 : ISIC 0111, 0112, 0113, 0140, 1513, 1514, 1531, 1549, 2423
- 정부 수준 : 중앙
-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7.9조)
- 조치내용 : 내국민 대우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예 사업 활동의 설립 및 운영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 a. 발아
 - b. 재배
 - c. 수확 및 수확 후
 - d. 가공
 - e. 유통, 거래 및 마케팅
 - f. 연구, 그리고
 - g. 농업 관광

원예와 그 이행규정에 관한 2010년 법률 제13호에 명시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조정을 목적으로 원예 하위분야의 기존의 투자자¹²에게 4년의 과도기간이 주어진다.

원예 하위분야의 정의는 원예에 관한 2010년 법률

¹² 기존의 투자자는 원예에 관한 2010년 법률 제13호 제정 전의 기존의 투자자를 지칭한다.

제13호에서 찾을 수 있다.

조치근거 : 원예에 관한 2010년 법률 제13호, 그리고

정부 정책

18. 분야 : 에너지
- 하위 분야 : 재생 에너지 소규모 발전소(1메가와트-10메가와트)
- 산업 분류 : ISIC 4010
- 정부 수준 : 중앙
-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7.4조)
- 조치내용 : 재생 에너지 소규모 발전소(1메가와트-10메가와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는 49퍼센트의 지분 이하로 제한된다.
- 조치근거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44호